[무배당 마일리지운전자보험22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무배당 마일리지운전자보험2201
(1종: 만기환급형, 2종: 순수보장형)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 법률상의 배상책임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용)	3/10/20년	전기납	18~80세	월납 연납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부상추가(운전자용)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운전자용)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깁스치료비				
	일반상해수술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18~60세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18~80세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보이스피싱손해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일상생활배상책임	3년				
	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	3년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최초	5년	전기납	18세 ~80세	연납 월납
		갱신	5년	전기납	23세 ~95세	연납 월납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	최초	3년	전기납	18세 ~80세	연납 월납
		갱신	3년	전기납	21세 ~95세	연납 월납
		갱신	2년	전기납	36세 ~98세	연납 월납
		갱신	1년	전기납	27세 ~89세	연납 월납
제도성 특별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		-	-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2)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에서,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최초가입 보험기간(3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만큼 보험기간 적용함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마일리지 할인

가. 적용 대상 및 할인 신청에 관한 사항

① 마일리지 할인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할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에 부가 가능함.(유지중인 계약의 피보험자가 영업용 운전자 또는 비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마일리지 할인 적용은 종료됨.)

② 기존 유지 중인 계약에서 마일리지 할인 신청은 마일리지 할인신청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③ 마일리지 할인 정산일은 마일리지 할인을 운행 정보 전송 후에 마일리지 할인을 신청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선택한 날로 함. 단,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마일리지 할인 정산일은 해지일의 다음날로 함.

④ 마일리지 할인 대상 차량(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은 1증권 당 1차량에 한함. 단, 피보험자동차로 이미 등록되어 할인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가족 중 1인에 에 한하여 별도의 증권으로 마일리지 할인 신청이 가능함. 단, 정산 시 주행거리는 피보험자 각각의 계약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함.

⑤ ④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가족 중 1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부모
- 본인의 자녀

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변조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마일리지 할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상기 가입제한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할인 적용을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할인 신청을 취소하며, 그 때까지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정산 지급된 금액(이하 “보험료 할인분”이라 함.)을 환수함.

나. 마일리지 할인 신청 시 운행정보의 전송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마일리지 할인 신청 이후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

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함.

② 다만, 당사 유효한 자동차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동차로서 할인 신청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주행거리를 회사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행거리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마일리지 정산을 위한 운행정보의 전송

① '7.(1).가.'에 따라 마일리지 할인을 신청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사진 및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함.

- 직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로부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신청한 날까지의 운행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함.

②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함.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교체(대체)한 날(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교체(대체)전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할인을 정산한 후, 교체(대체) 후 차량에 대해 마일리지 할인을 적용함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마일리지 할인 적용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함.

- 직전 정산기간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함.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마일리지 할인 정산을 제한할 수 있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①에 따라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②에 따라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⑤ ③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회사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주행거리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지급하지 않음.

⑥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경우일지라도 주행거리를 고지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지급함.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3)에 따라 운행정보를 송부 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마일리지 할인 신청을 취소하며, 그 때까지 정산 받은 보험료

할인분을 환수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라. 마일리지 할인의 적용

①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의 환급

- 보험회사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로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송금. 다만, 정산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송금.
- 위기한 내에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② 보험료 할인분의 정산

- 보험료 할인분은 직전정산일부터 당회정산일까지 납입한 영업보험료에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함.

보험료 할인분	=	직전정산일부터 당회정산일까지 납입한 영업보험료	×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

-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은 아래의 주행거리별 할인율을 적용함.

<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 >

1년간 주행거리	할인율
12,000km이하	할인 전 영업보험료의 6%
12,000km초과	할인 전 영업보험료의 0%

- “1년간 주행거리”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음.

1년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당회정산일의 주행거리 - 직전정산일의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직전정산일로부터 당회정산일까지의 기간

3) 용어풀이
- 당회정산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마일리지 할인 정산을 신청한 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한 날짜
- 당회정산일의 주행거리 : 당회정산일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촬영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
- 직전정산일 : 직전 정산일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마일리지 할인 정산을 신청한 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한 날짜(다만, 최초 마일리지 정산 신청인 경우, 마일리지 할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직전정산일의 주행거리 : 직전정산일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촬영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다만, 최

초 마일리지 정산 신청인 경우, 마일리지 할인 신청일에 촬영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함)

(2) 마이 키즈 할인

가. 적용 대상

피보험자가 만 7세 이하(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작일자 기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용어풀이>
자녀라 함은 아래와 같음.
1. 법률상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양자녀, 계자녀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 적용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함.

② 회사가 '가. 적용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할인자격 조건의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 키즈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다. 마이 키즈 할인 금액

증빙서류 제출일 이후 차회에 납입하는 할인 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3) 상기 보험료 할인은 각각 중복 적용 가능함.
단, '7.가. 마일리지 할인'과 '나. 마이 키즈 할인'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가. 마이 키즈 할인'을 우선 적용함.

8.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가. 대상 특별약관

-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상기 특별약관은 갱신주기((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5년 /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년)마다 자동갱신 됨
- 갱신보험료의 계산
  상기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함)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에 대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 및 위험률 재산출 등으로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 갱신보험료의 안내
  회사는 상기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함

다. 보험료 납입방법

- 상기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p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운전및 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17.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대상담보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부상추가(운전자용)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1) 회사는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
   가.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라.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림.
(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8. 간병인지원 관련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1) 대상 특별약관
   가.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
   나. 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
(2)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18.(3)'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함. 단, 보험수익자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생한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함
(3)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금액을 말함
(4) '18.(3)'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함
(5) '18.(2)'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

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함

19. 기타

(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또는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2)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3)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및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담보는 아래 담보와 동시가입이 불가함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4) 응급실내원비(응급) 또는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5)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또는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6) 응급실내원비(응급) 및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담보는 아래 담보와 동시가입이 불가함

·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7)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및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함

(8)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담보,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담보,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함

(9)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계약 보험기간 10년 만기 및 20년 만기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계약 보험기간 3년 만기에 한해 가입 가능함

(10)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은 주계약 보험기간 10년 만기 및 20년 만기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은 주계약 보험기간 3년 만기에 한해 가입 가능함

(11) 판매채널 :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1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① 적용근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적용범위: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 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시 전환 가능

(13)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및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특별약관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14)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및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특별약관의 경우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